

# 2022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

## 개 요

- ◆ 일시·장소 : 2022. 8. 19.(금) 10:00~13:10,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
- ◆ 참석 : 10명
  -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(6) : 이승한, 최승철, 김수정, 이임혜경, 손영주, 김원규
  - 상임 시민인권보호관(2) : 노승현, 이해리
  - 소관부서(2) : 인권보호팀장, 담당 주무관

### 상정안건 : 총 11건

- 보고사항 : 2건(각하 2건)
- 의결사항 : 9 건(권고 2건, 기각(일부 조사중지 1건 포함) 6건, 이유없음 1건)

### 심의결과

구분	합계	원안가결	수정가결	재상정
	11건	8건	0건	3건
보고사항	2건	-	-	2건 (각하 2)
의결사항	9건	8건 (권고 1, 기각 6, 이유없음 1)	-	1건 (권고 1)

### 결과내역

의안번호	사건번호	의안명	조사의견	상정결과
보고사항 : 2건(각하 2건)				
22-71	22신청-49	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	각하	재상정
22-72	22신청-50	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	각하	재상정
의결사항 : 9건(권고 2건, 기각(일부 조사중지 1건 포함) 6건, 이유없음(기각) 1건)				

의안번호	사건번호	의안명	조사의견	상정결과
22-73	22신청-15	직장 내 괴롭힘	권고	원안가결
22-74	22신청-47	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	권고	재상정
22-75	22신청-17	직장 내 괴롭힘	기각	원안가결
22-76 (재상정)	22신청-18,21 (병합)	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	일부기각 일부조사중지	원안가결
22-77	22신청-27	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	기각	원안가결
22-78	22신청-29	위탁기관 구성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	기각	원안가결
22-79	22신청-34	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	기각	원안가결
22-80	22신청-36	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	기각	원안가결
22-81 (이의)	22이의-15	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이의 (원사건 22신청-32)	이유없음 (기각)	원안가결

## □ 보고사항

- [의안 제22-71호]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
  - 22신청-49 (각하) 재상정
  - 본 사건은 올해 3월에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5월 말 6월 초에 ‘혐의없음’ 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의견을 상정하였으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문 및 인권침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.
- [의안 제22-72호]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
  - 22신청-20 (각하) 재상정

- 본 사건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되어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20조 제3항 제6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의견을 상정하였으나 의안번호 제22-71호 사건과 보강 증거 가능성도 있어 사건을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.

## □ 의결사항

### ○ [의안 제22-73호] 직장 내 괴롭힘

- 22신청-15 (권고) 원안가결
- 인정사실 나.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큰소리로 다그치는 과정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‘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’ 라고 한 발언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말을 했다는 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발언의 인정하기 어려움.
- 본 사건은 부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준 행위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.

### ○ [의안 제22-74호] 사업소 직원에 의한 성희롱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

- 22신청-74 (권고) 재상정
- 이 사건의 판단 4)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을 인용했는데 이는 수집 이용 내지 제공자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건의 피신청인은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취득해서 이용한 사람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제19조를 인용하는 게 적합함.
-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이 어떤 경로로 취득을 했는지가 확인이 안되고 있어 ‘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및 관리절차 마련’ 하라는 권고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

취득이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고 피신청인의 부서에 확인해서 피신청인이 어느 부분까지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추가로 필요함.

- 개인정보 취득과정에 대한 내용과 성희롱으로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권고문을 수정해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.

#### ○ [의안 제22-75호] 직장 내 괴롭힘

- 22신청-17 (기각) 원안가결
- 인정사실 다.에서 신청인은 팀 이동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과 참고인은 신청인에게 배려하며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정 사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그것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수정이 필요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바꾼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지않고 업무를 바꾼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걸 인정사실에서 명확하게 하기 바람.
-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지만 피신청인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함.

#### ○ [의안 제22-76호]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

- 22신청-18, 21(병합) (일부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 일부 기각) 원안가결
- 피신청인 1은 내부조사에서 ‘혐의없음’으로 결론 나왔는데 다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사 거부하고 있어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하고 피신청인 2는 기관 퇴사로 인해 소재 불명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사중지하고 사건종결 함.
- 피신청인 3의 해당 발언에는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안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발언만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려움.

- 피신청인 4, 5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움.
- 피신청인 6이 보낸 메일은 부적절하나 일회성에 불과함.
- 피신청인 3, 4, 5, 6의 행위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.

○ [의안 제22-77호]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

- 22신청-27 (기각) 원안가결
-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경력의 차이나 근속 기간의 차이가 있어 피신청인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청인 및 참고인 3도 지위의 우위를 부인하고 있어 ‘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 이용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행위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.

○ [의안 제22-78호] 위탁기관 구성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

- 22신청-29 (기각) 원안가결
- 피신청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민원제기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.

○ [의안 제22-79호]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

- 22신청-34 (기각) 원안가결
- 피신청인들이 신청자에게 한 인격권 침해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함.

○ [의안 제22-80호]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

- 22신청-36 (기각) 원안가결

- 피신청인이 신청자에게 ‘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’라고 말한 발언은 신청인이 불쾌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언동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에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함.

○ [의안 제22-81호]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결정 이의

- 22이의-15 (이유없음) 원안가결
- 원결정 자료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결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고 원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서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결정함.